

2012_13 GLOBAL ISSUE¹



2012 / 13 글로벌 이슈 리포트

Chapter.5

사회문화

FTA 체결에 따른 디자인산업대응방안

FTA 체결에 따른 디자인산업 대응방안

글.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서론

지역주의의 확산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모형을 채택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의 경제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고 시장 또한 협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자를 도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은 해외 시장에 판매해야만 했다. 이 시기에 있어 세계무역은 1947년에 출범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의한 다자간 자유무역 환경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대외무역 환경은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자간 자유무역 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정치적·경제적 패권 국가였던 미국의 주도 하에 민주주의 진영의 재건과 발전을 염두에 두고 조성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과 패전국인 독일, 일본 등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자유무역의 환경 속에서 빠른 속도로 경제 복구가 가능할 수 있었다.

GATT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1947년 제1차 협상이래 1964~67년 개최된 제6차 협상(케네디 라운드)까지 미국의 막강한 리더십과 자유무역기조에 대한 의지 하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타결되었으며, 주된 논의의 대상은 상품 무역의 주요 장벽인 관세를 인하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는 한편으로는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발전하여 미국의 경쟁 국가로 부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해 1980년대에 들어서는 다수의 국가로 지역주의(regionalism)⁽¹⁾가 확산되면서 세계 무역은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와 함께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1) 1957년 체결된 EEC가 GATT 체제 하에서 지역주의의 시작이 된다.

(2) GATT 제24조

Design
View

2012-2013

글로벌
이슈

보고서. 8

FTA 체결에
따른
디자인산업
대응방안

특히 1990년대 들어 그동안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고수해 오던 미국이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의는 급격히 확산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1986~1993년)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출범되기는 하였으나,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WTO 회원국들이 여타 회원국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개방 약속(양허)을 하게 되면 이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 하에서 여타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각국들이 처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자 차원에서의 양허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WTO 회원국들은 양허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2001년에 출범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는 2012년 1월 현재까지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대립으로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반면, RTAs는 각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협상 대상국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과 무역 자유화 분야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 협상에 비해 부담이 적은 반면 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이익은 더 클 수 있다. 게다가 RTAs와 같은 지역주의는 GATT/WTO에서도 예외 조항⁽²⁾으로 인정하고 있어 WTO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RTAs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 정책을 채택해 왔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역주의의 확산은 수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역내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지만 해당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장벽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외국가는 관세 인하분 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과 함께 우리 나라는 19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 후반까지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해 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RTAs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국가 간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RTAs의 한 형태이며, 경제통합의 강도 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에 해당한다.

FTA의 사전적 의미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협정 체결 당사국간에 제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것을 약속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FTA는 두 개의 국가 간에 많이 체결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3개국 간에 혹은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기도 한다. 그리고 FTA의 대상 분야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비관세,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상품의 무역과 관련된 무역 장벽이 중심이 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기에 더해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인력이동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통상규범이 모두 협상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FTA에서는 협상 참여국의 협의 하에 협상의 대상 범위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자간 무역협상과 차이가 있다.

FTA와 같은 RTAs를 체결하는 것은 각 국가의 선택에 달려있다. RTAs를 체결하는 경우 역내국간에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무역확대효과(Trade Expansion Effect) 등의 이익이 발생하나, 이들 효과는 역외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RTAs에 편입하지 못하는 경우 RTAs가 가지는 역외 관세 차별의 불이익은 클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효과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TO에 통보된 RTAs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현재 총 317건의 RTAs가 통보·발효된 상태이며 이중 대부분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체결·발효된 것이다.⁹⁾ 또한 317건의 RTAs중 FTA가 184건으로 FTA는 RTAs의 주요 형태가 되고 있다.

(3) WTO에서 집계·발표하고 있는 RTAs 현황은 일반적인 집계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WTO에서는 상품 협정과 서비스 협정을 다른 협정으로 집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EU FTA는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협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WTO에서는 한·EU FTA를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각각으로 보고 2개의 RTAs로 집계한다.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후반 까지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체제 중심의 통상정책을 수행해 오다가 대외무역환경의 변화와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대내적인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대외 통상정책을 수정하여 지역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는 1998년에 논의가 시작된 후 2002년에 타결되었으며, 양국의 비준을 거쳐 2004년 4월에 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여 2012년 1월 현재 총 8개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그 외 7개의 FTA가 협상 중에 있다. 국가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총 45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 상품무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기체결 FTA 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4%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구분 | 타결 | 발효 | |
|----------|-------------|---|---|
| 기체결 FTA | 한·칠레 FTA | 2002.10 | 2004.4 |
| | 한·싱가포르 FTA | 2004.11 | 2006.3 |
| | 한·EFTA FTA | 2005.7 | 2006.9 |
| | 한·ASEAN FTA | 상품. 2006.4 서비스. 2007.11 서명 투자. 2009.4 | 상품. 2007.6 서비스. 2009.5 투자. 2009.9 |
| | 한·인도 CEPA | 2008.9 | 2010.1 |
| | 한·EU FTA | 2009.7 | 2011.7 |
| | 한·페루 FTA | 2010.8 | 2011.8 |
| | 한·미 FTA | 2007.4 / 2010.12 추가협상 | 2007.6 서명 / 2012 발효 예정 |
| 협상중인 FTA | 한·캐나다 FTA | 2005.7 협상 개시 / 2008.3 제13차 협상 완료 | |
| | 한·멕시코 FTA | 2006.2 협상 개시 / 2008 제2차 협상 완료 | |
| | 한·GCC FTA | 2008.7 협상 개시 / 2009.7 제3차 협상 완료 | |
| | 한·호주 FTA | 2009.5 협상 개시 / 2010.5 제5차 협상 완료 | |
| | 한·뉴질랜드 FTA | 2009.6 협상 개시 / 2010.5 제4차 협상 완료 | |
| | 한·콜롬비아 FTA | 2009.12 협상 개시 / 2011.10 제5차 협상 완료 | |
| | 한·터키 FTA | 2010.4 협상 개시 / 2011.3 제3차 협상 완료 | |
| 협상중단 FTA | 한·일 FTA | 2003.12 협상 개시 / 2004.11 제6차 협상 후 현재까지 협상 중단상태 | |

FTA와 디자인산업의 관계

WTO 출범 이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디자인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서비스는 FTA와 무관한 분야였다. 즉 UR 이전까지 다자협상의 주된 논의 대상은 상품의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관세와 NTB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서비스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8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증가하면서 다자간 서비스 무역 규범과 서비스 시장 개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에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되어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되었으며, UR 당시 회원국 간 서비스 양허 협상을 통해 각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계획(양허표)을 확정하고 WTO 출범 이후부터 이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A도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상품 중심의 협정 체결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자 차원에서 GATS가 제정·발효되고 서비스 분야도 협상의 대상 분야로 포함되면서 FTA에서도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는 양상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WTO에 통보된 FTA 중 2000년대에 체결·발효된 FTA 대부분이 서비스 협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FTA에서 디자인산업은 상품과 서비스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디자인산업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여타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종의 구분이 다소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한 공산품(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인 프로세스가 동반되는 두 기업의 예를 들어 보자. 첫 번째 제조업체는 그 기업 내의 특정 부서에 디자인 관련 인력을 두고 자체적으로 디자인 창작을 한 후 제품에 반영하고 있고, 다른 한 제조업체는 제품 제조 기능만을 전담하고 제품 디자인은 외부의 디자인전문기업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기로 하자. 이때 두 기업 모두 디자인산업과 관련이 있지만 전자는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며 후자는 제조업체는 제조업으로, 디자인전문기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된다.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된 선진국에서는 전문기능의 분화와 아웃소싱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자인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을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개도국의 경우에는 전문 기능을 아웃소싱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산업이 제조업 내에 포함되는 것이 많을 수 있다.

한편, 디자인 창작물이 제품에 체화되어 거래될 때에는 관세 등 상품 무역에 관한 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즉, 특정 제품의 디자인 창작활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에 관련 없이 디자인이 반영되어 생산된 공산품이 국제적으로 거래될 때에는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FTA에서도 상품양허의 대상이 된다. 반면, 디자인전문기업에 의해 국제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서비스로 거래되거나 디자인전문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 등은 전술한 GATS의 적용을 받고 FTA에서는 서비스협상의 대상이 된다.

FTA에서 서비스협상 및 그 결과로 산출되는 서비스 협정문은 GATS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GATS는 일반적인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개별 국가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양허표), 최혜국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MFN 면제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TA 협상에서도 이들 네 가지 요소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담아 서비스협정문이 작성된다.

본고에서는 디자인산업 중 제조업 관련 분야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FTA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은 WTO와 마찬가지로 CPCprov(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작성된 W/120이 기준이 된다.⁽⁴⁾ W/120에서 서비스업종은 대분류 12분야로 구분되며, 총 155개 세부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W/120에서 디자인산업은 독립적인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W/120을 기준으로 디자인산업은 기타서비스(1.F.t.) 중 전문디자인서비스(CPC 87907)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며, 그 외에 광고서비스(1.F.a.) 중 일부에 포함되는 그래픽디자인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1.B.) 중 일부로 포함되는 컴퓨터그래픽 등이 협의의 디자인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⁵⁾

그 외에도 광의의 디자인서비스에 해당되는 업종은 건축서비스(1.A.d.), 포장서비스(1.F.q.), 출판서비스(1.F.r.), 영화 및 비디오 제작·유통 서비스(2.D.a.)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업종 중 본고에서는 협의의 디자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체결 FTA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4)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Classifications Registry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t.asp>),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세부 코드 및 내역 참고.

(5) 1.F.t., 1.F.a., 1.B.는 W/120의 sectors and sub-sectors 분류 코드이다. 이하 1.A.d., 1.F.q., 1.F.r., 2.D.a. 등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방대한 각각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서 디자인산업과 관련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서비스시장 분야별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양허 내용과 서비스 인력이동 양허 내용,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협정문 내용이다. 서비스 협상에서 등장하는 양허(Commitments)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자유화된 사항 또는 여타 개방 사항을 국제법상 약속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GATS를 따르고 있는 WTO 서비스협상이나 FTA 서비스협상에서 양허를 하는 경우, 협정 발효 3년 동안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협정 발효 3년 이후에는 수정·철회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이해가 관련된 국가에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⁶⁾ 양허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발적 자유화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국제법상 약속(양허) 없이 개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허와 달리 자발적 자유화는 각 국가가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수정·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의 의무도 없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장 개방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자발적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주게 된다. 따라서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 자유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보다 개방된 조치를 취하기 마련이다. 어떤 국가가 특정 업종에 대해 양허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은 아니다. 환언하면 자발적 자유화만 하고 양허를 하지 않은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허용이 된다. 단, 외국인 투자가 또는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허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투자 위험이 높은 개도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상품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에 의해 국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와는 달리 서비스는 무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거래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 협정인 GATS 제1조(Scope and Definition)는 서비스 무역의 형태 또는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의 이동(mode 4)이 그것이다. 디자인산업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디자이너가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현지의 디자인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활동은 서비스 무역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6) GATS 제21조 참고.

(7) 해외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분야는 교육서비스(유학 또는 어학연수), 의료서비스(의료관광)가 대표적이다.

(8) 한·ASEAN FTA, 한·EU FTA 등에서는 WTO 서비스협상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양허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한·싱가포르 FTA 등에서는 양허표를 사용하지 않고 유보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보 목록을 채택한 FTA에서는 유보 목록(현재유보, 미래유보)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사항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유보 목록은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로 구성되며, 현재유보는 현행 개방 사항을 약속(향후 제한사항의 강화 금지)하는 것이며, 미래유보는 향후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제한사항을 강화하거나 개방을 철회할 수 있는 정책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글로벌 이슈

보고서. 8

FTA 체결에 따른 디자인산업 대응방안

의 디자인전문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무역 중 상업적 주재에 속한다. 우리나라 국민(최종 소비자)이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창작된 디자인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을 해외소비라고 할 수 있으나, 디자인산업의 특성상 해외소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⁷⁾ 그 외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여러 가지 전송 수단(인편 포함)에 의해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국경간 공급이 된다.

서비스 무역의 네 가지 형태

| 국경간 공급 | Cross-border Supply: Mode 1 |
|---------|--|
| 정의 |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로의 서비스 공급 |
| 예 | 미국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한국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전송받고 대금을 지급 |
| 해외 소비 | Consumption Abroad: Mode 2 |
| 정의 |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
| 예 |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현지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구매해서 소비 |
| 상업적 주재 | Commercial Presence: Mode 3 |
| 정의 | 공급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
| 예 | 우리나라 디자인 기업이 미국 현지에 디자인 법인을 설립하고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 |
| 자연인의 이동 | Presence of Natural Persons: Mode 4 |
| 정의 | 공급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
| 예 | 한국 디자이너가 중국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디자인 창작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령 |

FTA를 체결하는 국가는 서비스 분야별로 전술한 네 가지 무역의 형태별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서비스 양허표나 서비스 유보 목록에 명시하게 된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양허표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하고, 양허하지 않는 경우 약속 없음(unbound)으로 기재하거나 특정 업종 전체를 양허표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⁸⁾ 특정 분야의 특정 무역형태에 대해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 그 내용을 양허표에 명시하게 된다. GATS에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은 국적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제반 조치로 아래의 표와 같이 총 여섯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어떤 국가가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 시장의 특정 업종에 대해 시장접근 양허를 하는 경우 양허표상에 별도의 명시를 하지 않고 제한 없음(none)으로 양허를 하면 아래의 여섯 가지 제한사항과 관련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된다.

GATS 제16조 시장접근 관련 제한사항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단, 서비스를 위해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는 제외)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되거나 혹은 한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외국인 자본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9) 서비스 양허표에서 mode 1은 1), mode 2는 2), mode 3는 3), mode 4는 4)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FTA 협상에서 전문디자인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에 있어 여타 무역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은 두지 않는 반면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해 외국인지분을 49%로 제한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된 경우, 이 국가는 서비스 양허표에서 전문디자인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 항목 중 mode 3에 ‘외국인지분을 49%로 제한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게 된다.⁹⁾

전문디자인서비스 양허의 예_ 양허표 예시

| 분야 및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 기재사항 |
|-------------|--|--|---------|
| 1. 사업서비스 | | | |
| A. 전문가 서비스 | : | : | : |
| F. 기타 사업서비스 | | | |
| T. 기타 | : | : | : |
| 전문디자인서비스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 CPC 87907 | 제한 없음 외국인지분을 49%로 제한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수평적 조치 기재사항 외에는 약속 없음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평적 조치 기재사항 외에는 약속 없음 | |

Design View

2012-2013

한편,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사항은 말 그대로 국적에 따라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괄한다. GATS에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은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GATS 제17조 내국민대우 관련 제한사항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 조에 상정된 구체적 약속은 어떤 회원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그 밖의 회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글로벌 이슈

보고서. 8

FTA 체결에 따른 디자인산업 대응방안

서비스 인력이동에 대한 양허 내용은 양허표의 수평적 조치(Horizontal Commitments)에 기재하고 개별 업종별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상의 mode 4에 있어서는 ‘수평적 조치 기재사항 외에는 약속 없음(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FTA 협정문에 따라 서비스 인력이동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챕터(Chapter)나 부속서(Annex)에 다루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 인력이동에 대한 양허는 주로 상업적 주재와 관련된 사업방문자, 투자자 및 거래자, 기업내 전근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지만 최근 상업적 주재와 관련되지 않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나 독립전문가의 이동도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디자인분야 양허 현황

우리나라는 FTA 체결 이전인 UR 당시 디자인관련 서비스업종 중 광고서비스(1.F.a)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1.B.)는 mode 1, 2, 3에 대해 제한 없이 양허를 하였으며, 기타서비스(1.F.t.) 중 전문디자인서비스는 양허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에 WTO에 제출된 DDA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에서 기타서비스(1.F.t.) 중 전문디자인서비스를 양허 할 것을 제안한 다음 이후에 체결된 FTA 대부분에서 동 분야의 mode 1, 2, 3에 대해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¹⁰⁾ 단, 한·미 FTA와 한·페루 FTA에서는 전문디자인서비스의 시장접근이 포괄 유효되어 있어 동 분야의 시장접근은 미양허 상태이다. 한편, 양허 내용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는 자발적 자유화 관련 사항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매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년 3월에 발표된 동 공고에 따르면 디자인 관련 서비스 업종은 외국인투자 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디자인 관련 서비스 업종은 모든 분야에서 자발적 자유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서비스분야) 시장접근 양허 현황

| | UR | DDA ^{revised offer} | 한ASEAN | 한인도 | 한EU | 한페루 | 한미 |
|--|--------------|------------------------------|--------|-----|-----|---------------|----|
| 1.F.a. 광고서비스 그래픽디자인서비스 | | | | | | | |
| mode 1 | 제한없음 | | | | | 유보 목록 미포함(양허) | |
| mode 2 | 제한없음 | | | | | 단, 영화 진흥, | |
| mode 3 | 제한없음 | | | | | 광고 또는 후반제작 | |
| mode 4 |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 | | | | 서비스는 미래유보 | |
| 1.F.t. 기타서비스 전문디자인서비스 CPC 87907 | | | | | | | |
| mode 1 | 미양허 | 제한없음 | | | | 시장접근 미양허 | |
| mode 2 | 미양허 | 제한없음 | | | | (포괄유보) | |
| mode 3 | 미양허 | 제한없음 | | | | | |
| mode 4 | 미양허 |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 | | | | |
| 1.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전문분야 | | | | | | | |
| mode 1 | 제한없음 | | | | | 유보 목록 미포함(양허) | |
| mode 2 | 제한없음 | | | | | | |
| mode 3 | 제한없음 | | | | | | |
| mode 4 |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 | | | | | |

Design View

2012-2013

(10) 단, DDA가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DDA 수정양허안은 발효 이전의 상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11) 자격요건과 체류기간을 두고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12) 동 자격요건으로는 CSS, IP 모두 3년제 관련 고등교육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CSS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13) 단,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에 한하여 CSS 및 IP의 이동을 허용하며, 서비스 공급계약은 도급계약만을 허용하고 고용계약은 불허하고 있다.

(14) 여타 자격요건은 한·인도 CEPA와 유사하나, 학력요건 면에서 4년제 고등교육 학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디자인 서비스 인력 이동의 경우 UR 이후 최근에 체결된 FTA까지 대부분 수평적 조치 외에는 양허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협정문의 서비스분야 수평적 조치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사업방문자, 투자자 및 거래자, 기업내 전근자 등의 인력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¹¹⁾ 하고 있고, 각각의 디자인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mode 4는 수평적 조치에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디자인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디자이너가 개별적으로 국내에 들어 와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않지만, 외국 디자인 전문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 본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디자이너를 파견(기업내 전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체결된 FTA에서는 디자인분야의 인력이동이 주로 상업적 주재, 즉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인력의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체결된 한·인도 CEPA와 한·페루 FTA에서는 상기의 양허 내용 외에도 상업적 주재와 관련이 없는 인력의 이동도 부분적으로 양허를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여기에서 상업적 주재와 관련이 없는 인력의 이동은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CSS)와 독립 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 IP)를 의미한다. CSS는 외국 서비스 법인에 소속된 자가 외국 서비스 법인과 우리나라의 법인간의 서비스 공급계약(도급계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IP는 외국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 서비스 전문가(주로 자가 고용 형태)가 한국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도급계약)에 의해 한국에 들어와서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분야를 살펴보면, 한·인도 CEPA에서 우리나라는 일정한 자격요건⁽¹²⁾ 을 충족하는 인도의 '자동차 관련 특수엔지니어링 디자인서비스(자동차 설계사)', '게임그래픽 디자이너'가 CSS 또는 IP 형태로 국내에 들어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¹³⁾ 하였으며, 동 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에 대해 허용하였다. 한·페루 FTA에서도 한·인도 CEPA와 유사한 자격요건⁽¹⁴⁾ 및 체류기간 제한을 두고 CSS와 IP의 이동을 양허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디자인산업 관련 대상 업종이 '컴

Design View

2012-2013

퓨터 이용 기계 디자이너, 컴퓨터 이용 전기 및 전자장비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및 삽화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한·인도 CEPA보다 다소 넓다.

한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국도 그 국가의 서비스시장을 일정 부분 양허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서비스 기업들이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국가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디자인산업 관련 분야의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ASEAN 국가의 경우 아직 까지 광고, 전문디자인서비스의 일부 분야를 양허하지 않거나 양허를 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태이다. 인도의 경우 그래픽디자인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서비스에서 상업적 주재에 대한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나 전문디자인서비스는 제한 없이 양허를 하였다. EU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양허를 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

보고서. 8

FTA 체결에 따른 디자인산업 대응방안

우리나라 FTA 상대국의 디자인산업(서비스분야) 양허 현황

| | 한ASEAN | 한인도 | 한EU |
|--|---|--|---|
| 1.F.a. 광고서비스 그래픽디자인서비스 | | | |
| mode 1 | 싱, 베. 제한없음 말. 상업적 주재만 허용 태, 인. 미양허 | 해외채널, 해외 출판인론은 인도업체를 통해 광고 해야함. 그 외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 mode 2 | 싱, 말, 태, 베. 제한없음 인. 미양허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mode 3 | 싱, 태. 제한없음 말. 합작, 외국인 지분 상한 30%, 현지제작 비율 설정 베. 합작요건 인. 미양허 | 법인설립, 외국인 지분 상한 49% 경영 관리는 인도측이 담당 | 제한없음 |
| mode 4 | 싱, 말, 태, 베.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인. 미양허 |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
| 1.F.t. 기타서비스 전문디자인서비스 CPC 87907 | | | |
| mode 1 | 싱(건축설계 제외 실내디자인). 제한없음 말, 태, 인, 베. 미양허 | 제한없음 | 인테리어 디자인 포함. 제한없음, 단 독일은 외국에서 수행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수입료에 대하여 국내규칙이 적용 |
| mode 2 | 싱(건축설계 제외 실내디자인). 제한없음 말, 태, 인, 베. 미양허 | 제한없음 | 인테리어 디자인 포함. 제한없음 |
| mode 3 | 싱(건축설계 제외 실내디자인). 제한없음 말, 태, 인, 베. 미양허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mode 4 | 싱(건축설계 제외 실내디자인).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말, 태, 인, 베. 미양허 |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 인테리어 디자인 포함.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
| 1.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전분야 | | | |
| mode 1 | 싱, 말(a~d), 인(a~c), 베. 제한없음 태. 미양허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mode 2 | 싱, 말(a~d), 인(a~c), 태, 베.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mode 3 | 싱, 말(a~d), 태, 베. 제한없음 인(a~c). 인도네시아 내 대표사무소 설립, 공동운영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mode 4 | 싱, 말(a~d), 인(a~c), 태, 베.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 수평적 조치 외 미양허 |

주. 한ASEAN FTA는 주요국(5개국: 싱가포르(싱), 말레이시아(말), 태국(태), 인도네시아(인), 베트남(베))의 양허 내용을 위주로 살펴봄.

한편, 한·페루 FTA와 한·미 FTA에서는 여타 FTA에 다르게 유보 목록⁽¹⁵⁾을 채택하고 있어 전술한 기체결 FTA와 직접 비교는 힘들다. 먼저 한·페루 FTA에서 페루의 유보목록을 살펴보면, 페루는 다수의 디자인 관련 분야를 현재 또는 미래유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유보 내용은 시장접근상(특히 투자) 직접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거의 없고 주로 내국민대우와 이행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페루 FTA에서 페루측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 디자인관련 인력의 CSS와 IP에 대해 양허를 하였다.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CSS 및 IP 이동 대상 분야와 자격요건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며, 체류기간만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⁶⁾

한·페루 FTA 중 페루측의 디자인산업 유보 현황

| 구분 | 유보 내용 |
|------|---|
| 현재유보 | 상업 광고 예술가 및 기술인력 내국민 의무 구성 (구성 80% 이상, 지급 보수 60% 이상) |
| 미래유보 | 시각 예술의 제작 및 전시 수공예품의 디자인, 제작, 배포 및 판매에 있어 최혜국대우에 대한 미래유보 수공예 산업(디자인, 유통, 소매, 전시 등)의 내국민대우, 이행요건에 대해 미래유보 보석 디자인 시각 예술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이행요건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국내 창작 콘텐츠 비율 부과 등에 대한 미래유보 시청각 산업의 내국민대우, 이행요건과 관련한 당사국(협정 체결 상대국)이 페루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당사국인에게 할 수 있음을 미래유보 |

한·미 FTA에서 미국은 디자인산업 전분야가 현재유보나 미래유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정부 비합치조치 대상 분야에서 전술한 디자인 관련 분야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디자인 산업(서비스)의 mode 1, 2, 3에 대해 제한 없이 양허를 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서 디자인산업 관련 분야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양허와 인력이동 양허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FTA 협정문에서 디자인산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협상 타결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를 살펴보면 여타 FTA에서는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EU FTA에서만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5) 유보 목록, 현재유보, 미래유보가 의미하는 바는 앞의 주 8) 참고.

(16) 한·페루 FTA 협정문의 부록 11가-3에 따르면, 페루는 우리나라의 CSS에 대해 체류기간을 6개월까지만 허용하며, IP에 대해서는 1년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입국 허용 동기가 되었던 조건(계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요청된 횟수만큼 연이어 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7) 미등록 외관에 대한 보호는 한국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EU의 경우 이사회규정(EC) 제6/2002호에 따른다.

(18) 현행 통관보류조치 적용 대상은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 상품이나, 한·EU FTA에서는 여기에 더해 특허, 식품품종권, 등록디자인, 지리적 표시 침해상품까지 추가되었다.

글로벌 이슈

보고서 8

FTA 체결에 따른 디자인산업 대응방안

한·EU FTA 협정문 중 지적재산권 챕터에서는 등록 디자인의 보호 기간을 최소 15년으로 하며, 미등록 외관에 대한 보호 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디자인보호법」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서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하고 있고, 미등록디자인(미등록 외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고 있어 한·EU FTA 내용은 국내 현행법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EU FTA 지적재산권 챕터에서는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품목을 제작,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0.28조), 미등록 외관의 경우, 미등록 외관을 복제하여 양도, 대여 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29조).⁽¹⁷⁾ 한·EU FTA 지적재산권 챕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집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사법당국은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침해자 또는 협정상 규정된 그 밖의 다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근원 및 배포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제10.45조 정보권), 사법당국에게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0.46조, 제10.47조, 제10.48조). 또한 한·EU FTA에서는 지적재산권(등록 디자인 포함)을 침해하는 상품을 통관보류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조치의 집행이 보다 강화되었다.⁽¹⁸⁾

한편 한·미 FTA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은 동 협정문의 지적재산권 챕터 내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FTA가 국내 디자인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디자인관련 서비스 업종 중 상당 부분은 이미 UR 당시부터 양허가 되었으며, 전문디자인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2005년 DDA 서비스 수정 양허안과 한·ASEAN FTA 부터 제한 없이 양허가 되었다. 또한 미국, 페루에 대해 전문디자인서비스의 시장접근이 미양허 상태이기는 하나 mode 3는 이미 자발적 자유화를 통해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체결 FTA가 국내 디자인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FTA 협정문에 구속성 있는 양허를 함으로써 외국 전문 디자인기업의 국내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둘째, 인도 및 페루와의 FTA에서 일부 디자인서비스 관련 분야의 CSS와 IP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인력이 국내로 진출할 가능성이 다소 증가하였다. 셋째, 한·EU FTA에서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가 현행 국내법 수준으로 타결되었지만, 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인 EU와 FTA를 체결·발효함에 따라 국내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FTA 체결에 따라 FTA 상대국의 디자인 서비스 분야가 양허됨으로써 우리 전문 디자인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이 가능해 졌다. 다섯째 FTA 환경 하에서 정부는 국내 디자인산업의 육성 또는 발전을 위해 제반 규제를 수립·시행할 때 반드시 FTA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sign View

2012-2013

선진국 전문 디자인기업의 국내 진출 증대 가능

EU와의 FTA 체결로 그동안 양허되어 있지 않았던 전문디자인서비스가 mode 1, 2, 3 모두에 있어 제한 없이 양허되었다. 이에 따라 EU의 전문 디자인기업들이 한국 내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국경간 공급 형태의 거래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 전문 디자인기업의 국내 진출이 증가되면 이들 모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디자이너들이 한국내 법인으로 와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기업 내 전근자의 이동 등),⁽¹⁹⁾ 국내에 진출한 EU 전문 디자인기업이 국내의 디자이너를 고용하기 때문에 국내 전문디자인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EU 중심의 선진국 전문 디자인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 국내 디자인 산업은 보다 경쟁적인 환경에 노출된다. 국내 디자인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자금력과 전문성 면에서 선진국의 전문 디자인기업에 경쟁열위에 놓여 있다는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디자인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발생될 수 있다. 다만, 전문디자인서비스 분야의 기존 투자 개방 조치⁽²⁰⁾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전문 디자인기업의 국내 진출 및 그에 따른 국내 디자인산업의 구조 조정은 단기적이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쟁의 촉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은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의 퇴출을 유발 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에 일정 부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쟁력이 높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고 그들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디자인기업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기업 규모가 대형화 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국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개선과 대개도국 진출 활성화 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U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의 전문 디자인기업의 국내 진출을 국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는 국내 우수 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독과점, 부당한 도급

(19) 단, ICT 등 상업적 주재와 관련된 인력의 이동은 자격요건과 체류기간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근무처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인력의 이동이 국내 디자인인력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20)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발적 자유화와 2005년 이후 동 분야 양허 등을 의미한다.

계약 관행 등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모니터링 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디자인 서비스의 핵심은 '창조적 사고를 보유한 우수 인력'인 바, 우수한 전문 디자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 및 개도국(인도, 페루)의 디자인 인력 국내진출 증대

우리 기업의 필요에 의해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의 전문 디자인 인력은 한국으로 와서 창작활동을 수행해 왔다. 즉, FTA 체결 이전에도 선진국의 관련 전문 인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문인력 관련 비자(특정활동(E-7) 비자 등)를 발급받고 국내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전문인력 바와 같이 선진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외국의 전문 디자인기업의 국내 투자가 증가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업내 전근자 등의 형태로 국내에 외국 우수 디자이너의 진출이 부분적으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국내 디자이너는 물론 국내 디자인 기업에 있어 경쟁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국내의 경쟁 촉진은 디자인 창작활동을 보다 증대 시키게 되고, 그 결과 국내의 디자인 경쟁력은 보다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체결 FTA에서 디자인분야의 인력이동과 관련된 주요 변화는 인도, 페루 등 개도국 디자인 인력의 국내 진출 가능성이 다소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도 및 페루에 대해 디자인서비스 분야를 별다른 제한 없이 양허했지만 이들 국가의 디자인서비스는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로 투자·진출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보다는 일부 분야에서 CSS와 IP 이동에 대해 양허를 함으로써 이들 분야의 인력 이동이 부분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디자인분야에서 인도와 페루의 CSS 및 IP 인력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활용하는 국내 디자인기업은 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활용할 수 있다. 한편 디자인 창작과 관련된 단순 프로세스나 특정 분야 업무를 이들 국가의 인력에게 맡김으로써 비용을 줄이면서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등 일정 부분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인력이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단순 기능 인력의 이동은 더욱 그러하다. 만일 국내 디자인산업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타나는 경우 국내 디자이너의 고용은 위축되며, 디자인산업 전반에서 덤핑 등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CSS의 경우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도급계약을 기반으로 외국의 디자이너가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 IP의 경우 외국 디자인 전문가(자가고용)가 한국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 와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디자이너가 국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유사한 효

(21) 한·인도 CEPA 협정문 제8.3조 및 한·페루 FTA 협정문 부속서 11A. Dection D 참고.

(22) 한·인도 CEPA 협정문 제8.2조 및 한·페루 FTA 협정문 제11.9조 참고.

Design View

2012-2013

글로벌 이슈

보고서. 8

FTA 체결에 따른 디자인산업 대응방안

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디자인 기업 중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고자 합법적·불법적 방법으로 이들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 디자인산업에 문제(가격 덤핑 등)가 발생되며 국내 디자인 인력의 수급 문제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CSS, IP 형태의 인력이동에 대해 입국 신청시 서류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해야 하고, CSS 및 IP를 도입한 국내 기업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IP를 도입하는 국내 업체가 인력파견기업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SS 및 IP의 이동과 그에 따른 국내 영향 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한·인도 CEPA 협정문과 한·페루 FTA 협정문에서는 CSS 및 IP 이동에 대한 보완장치로 필요에 따라 이들 인력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²¹⁾ IP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IP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경우 IP의 계약상대방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다.⁽²²⁾

선진국 및 개도국의 디자인 인력이 국내로 진출하게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디자인분야 우수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국내 디자인관련 대학의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과 인력교류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에서 디자인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내용이 협정문에 포함되었으나, 대부분 국내의 현행법 수준에서 타결됨으로써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인 EU와 FTA를 체결·발효함에 따라 국내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EU의 디자인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EU의 등록 디자인을 불법 도용하거나 모조품을 제작,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와 관련 협회는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한·EU FTA에서 타결된 디자인관련 지적재산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의 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외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각종 제도조치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활용하여 국내의 디자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EU FTA로부터 유발된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다른 한편으로 국내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강화시키게 되며, 그 결과 국내 디자인분야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진국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합법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외국 디자인에 의존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국내 창작활동에 매진하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또한 국내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전문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창작한 작품이나 상품에 대해 보다 큰 시장가치 평가가 가능해 지게 되고, 그와 같은 변화는 국내의 창작활동에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디자인기업의 대선진국 및 대개도국 진출 활성화 가능

우리나라 전문 디자인 기업은 FTA를 활용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 주요 유망 개도국으로 안정적인 진출이 가능해 졌다.

EU와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디자인산업(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mode 1, mode 3에 대해 제한 없이 양허를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디자인 기업은 미국이나 EU 국가에 디자인 R&D 센터, 현지 법인 등을 안정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인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지 시장(니치시장)을 발굴할 수 있는 등 이익이 기대된다.

21세기에는 첨단기술 확보만으로는 우리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우수 디자인은 첨단기술만큼, 또는 그 이상의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애플사의 제품들은 이를 잘 설명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디자인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우리 기업들이 디자인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외국의 디자이너와 우리나라의 디자이너가 경쟁하며 우수 디자인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디자인산업 규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

FTA가 체결·발효되면 국내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이 상당부분 위축되게 된다. 즉, FTA 협정을 통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 양허한 후 이에 위배되는 제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송 및 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격 제고와 FDI 유치 등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FTA가 발효되면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한 분야에 대해 신규로 제한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우리나라는 EU를 포함하는 여타국과의 FTA에서 디자인서비스 관련 분야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양허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배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없다. 한·미 FTA와 한·페루 FTA에서 '전문디자인서비스'의 시장접근은 미양허(포괄유보) 상태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자발적 자유화가 이루어진 분야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현행 자발적 자유화 상태를 후퇴시키는 제한 조치를 두기가 어렵다.⁽²³⁾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행 디자인 관련 분야의 정부 규제가 우리나라의 양허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만일에 그러한 규제가 발견되는 경우 조속히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분야에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와 관련 없는 '국내규제'는 자유롭게 시행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디자인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국내규제를 발굴·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제반 국내규제를 마련할 때 국제법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통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겠다.

(23) 필요시 자발적 자유화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FDI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